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54

발의연월일: 2021. 3. 5.

발 의 자: 장경태·김승원·김영주

김진표・유정주・이수진

이용빈 · 이용우 · 한준호

홍정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과 피로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 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	제57조(벌칙) ①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u>10</u>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u>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u>원 이하의 벌금</u> .
<u> <신 설></u>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제1항
	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
	는 추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